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8

발의연월일: 2020. 12. 1.

발 의 자 : 임오경 · 김민철 · 서영교

장철민 • 이상헌 • 유정주

이수진 • 전용기 • 박성준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으나 해당 분 야의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조리 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키우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조리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 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조리사가 될 수 없 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4조제1호).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리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54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 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1. 조리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 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호 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